

2024. 12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 목 차 』

1. 목적	1
2. 추진근거	
가. 관련 법률	1
나. 적용 범위	2
다. 용어의 정의	2
3. 사업 운영	
가. 사업추진 방향	5
나. 사업추진 체계	5
다. 사업추진 절차	6
라. 책무	7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 구성	7
나. 심의위원회 운영	9
다. 심의사항	9
5.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가. 사업공고	10
1) 공고대상	10
2) 공고방법	10
3) 지원금 지원 범위	11
4)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체	11
나. 지원사업 신청·접수	12

6. 지원업체 선정평가

가. 선정평가 절차	13
나. 사전검토(서류검토)	13
다. 사전검토(현장실사)	14
라. 지원업체 선정	14
마. 지원업체 확정	15
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보	15

7. 협약 및 지원금 지급

가. 협약체결	15
나. 협약해지	16
다. 협약변경	17
라. 지원금 지급	18

8. 지원사업 관리

가. 착수신고	18
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18
다. 상황보고	19
라. 사고의 보고	19

9. 총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가. 설치확인	20
나. 총 사업비 정산	20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가. 취득설비의 관리	21
나. 취득설비 처분의 제한 등	22

11. 보칙

가. 지원금 환수	22
나. 참여제한 여부	23
다. 처분통보	23
라. 이의신청	23
마.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24

12. 시행일 25

13. 기타사항 25

[부록]

[부록1] 지원대상 시설 항목 및 세부내역	26
[부록2]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	28
[부록3] 위반 시 제재사항	29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30
[별지 제2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34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5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36
[별지 제5호 서식] 현장실사 검토서	37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업체 평가표	39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	40
[별지 제8호 서식] 협약서	41
[별지 제9호 서식] 착수신고서	45
[별지 제10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46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	47
[별지 제12호 서식] 현장평가 검토서	49
[별지 제13호 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51
[별지 제14호 서식] 정산보고서	52
[별지 제15호 서식]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53
[별지 제16호 서식] 사후관리 보고서	54
[별지 제17-1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55
[별지 제17-2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지서	57
[별지 제18-1호 서식] 협약 변경 신청서	58
[별지 제18-2호 서식] 협약 변경 통지서	59
[별지 제19-1호 서식] 협약 해지 신청서	60
[별지 제19-2호 서식] 협약 해지 통지서	61
[별지 제20호 서식] 사업 포기 사유서	62
[별지 제21호 서식] 사고보고서	63
[별지 제22호 서식] 처분통보서	64
[별지 제23호 서식] 이의신청서	65
[별지 제24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66
[별지 제25호 서식] 청렴 서약서	67

1. 목적

본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도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 및 관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2. 추진근거

가. 관련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3조, 제19조

제3조(책무)

- ① 경기도지사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제19조(재정지원)

-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화학물질 관리 관련 교육을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적용 범위

- 1) 이 지침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지원업체 선정, 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용어의 정의

- 1) “운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및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대진TP)를 말한다.
 - ※ 경기TP 소관 시·군 : 9개 시(평택, 안산, 용인, 오산, 이천, 여주, 의왕, 화성, 안성)
 - ※ 경기대진TP 소관 시·군 : 2개 시(김포, 파주)
-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3) “신청업체”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4) “지원업체”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원업체 선정평가 등을 거쳐 참여가 확정된 업체로서 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져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5) “설치업체”란 지원업체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견적문의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설비제조·시공업체 및 물품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 6) “심의위원회”란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전검토를 거친 신청업체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현장실사 검토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기타 관련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7) “지원업체 선정평가”란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든 평가를 말한다.
- 8) “사전검토”란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위해 신청업체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및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9) “현장실사”란 신청서(첨부서류 등)에 근거하여 신청업체의 기본정보 및 신청 정보에 대해 확인하고자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 10) “현장평가”란 지원설비 개선완료서에 근거하여 지원업체의 현장과의 일치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 11) “현장조사반”이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선발·구성(1인 이상)하여 지원 업체 신청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의 현장실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 12) “협약”이란 운영기관과 지원업체 대표가 협약기간 동안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 13) “협약기간”이란 운영기관과 지원업체와의 협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 14) “사업기간”이란 사업 협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 15) “지원대상 시설”이란 화학물질관리법상 명시되어 있는 취급시설로 본 지원 사업의 지원항목 및 시설은 [\[부록1\]](#)과 같다.
- 16) “다른 용도로 사용”이란 설비의 종류, 규격 등 지원금 지원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설비를 개선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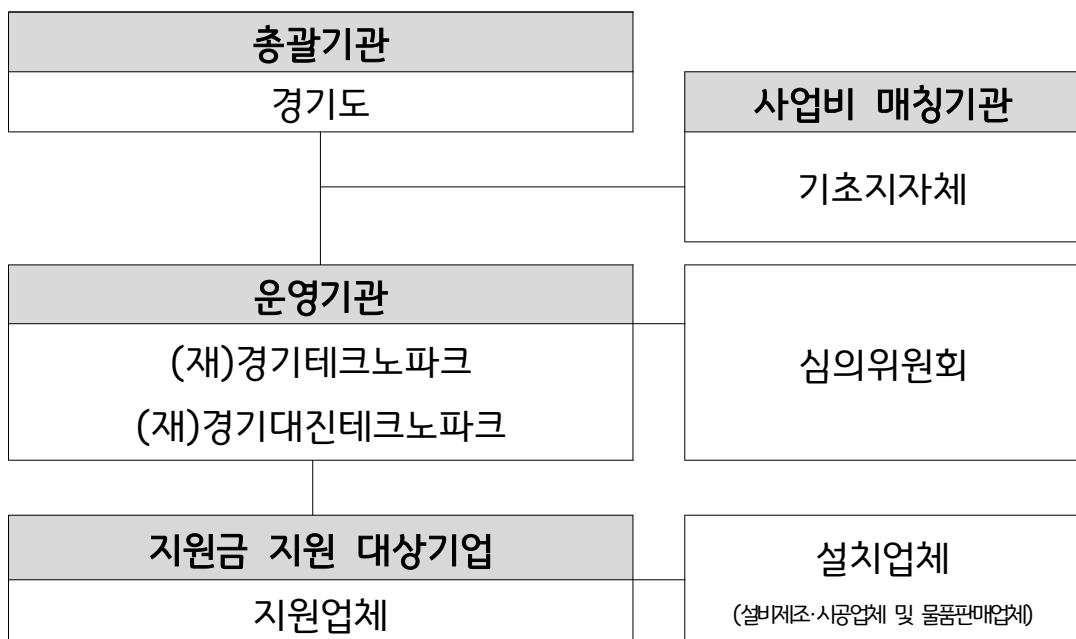
- 17) “취득설비”란 지원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설비 등 유형자산을 말한다.
- 18) “지원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지원업체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19) “사업비”란 시설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자부담금과 지원금의 합계를 말한다.
- 20) “총 사업비”란 지원금과 자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한다.
- 21) “정산”이란 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를 토대로 하여 지원업체가 설치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22) “이의신청”이란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일을 말한다.
- 23) “환수”란 지급받은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등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 운영

가. 사업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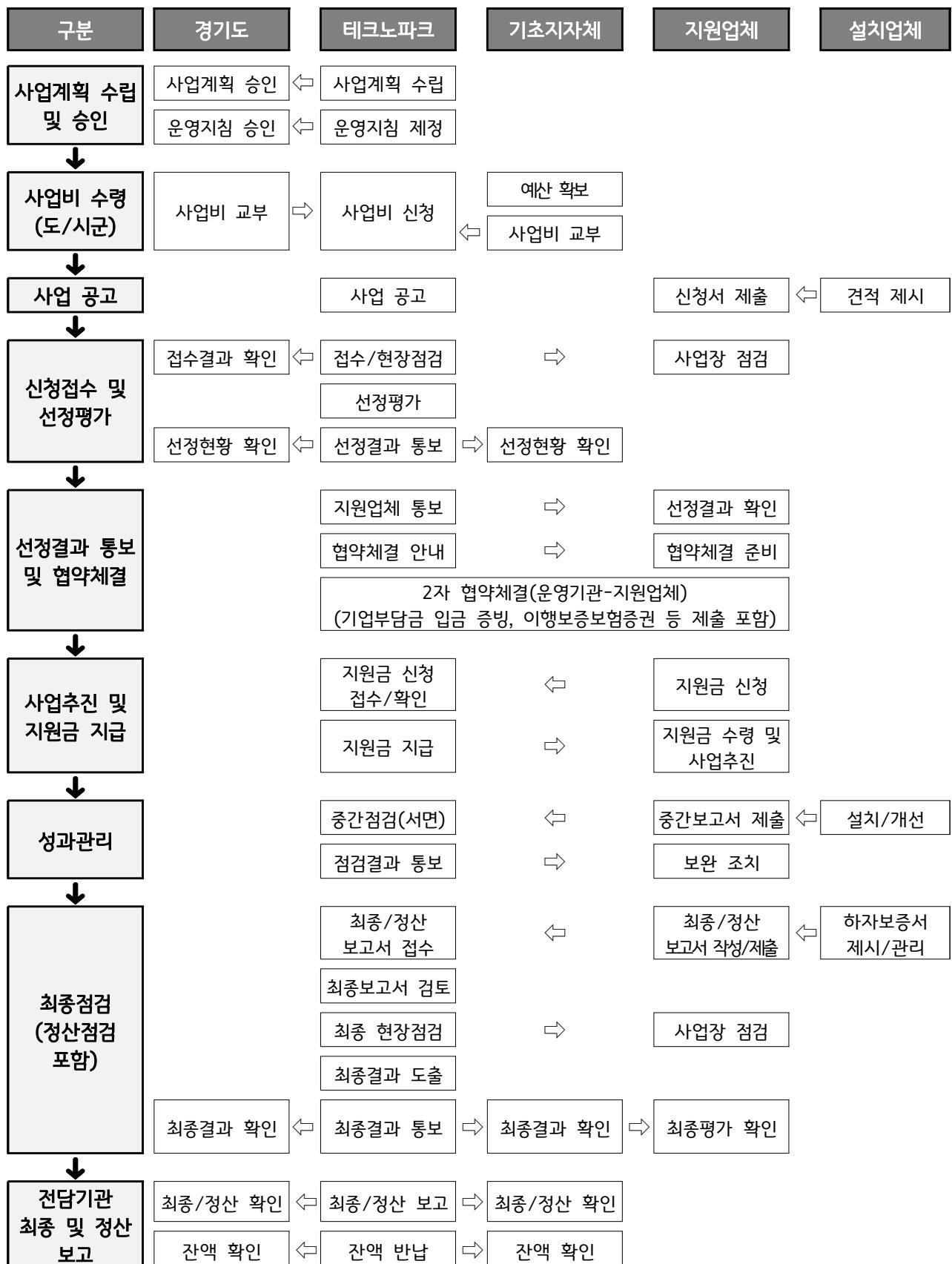
1) 지원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업체에서의 화학사고를 예방한다.

나. 사업 추진체계 : 도비-시·군비-자부담(지원업체) 매칭사업이며 실질적인 지원 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관에서 수행한다.



- 1) 총괄기관 : 정책수립, 사업계획, 지원사업 추진, 위탁사무지도 등 총괄
- 2) 사업비 매칭기관 : 매칭사업비 교부, 사업 정산검토, 위탁사무지도 등
- 3) 운영기관 : 지원사업 추진·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4) 심의위원회 : 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 5) 지원업체 :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도입 및 관리, 보고
- 6) 설치업체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설치 및 장비 제공

다. 사업 추진 절차



라. 책무

- 1) 운영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가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2) 운영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 요청 시 집행 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내용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당해연도 역무대행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지원업체는 설비개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점검·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4) 설치업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의위원회 구성

- 1) 운영기관은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업체 선정 등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이 확인된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가)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업계 기술 전문가
 - 나)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의 전문가
 - 다)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 라)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 3) 운영기관은 분야별 전문가(환경, 안전, 지원금 등)로 인력풀을 구성 할 수 있다.
- 4) 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라)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마)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업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신청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5)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6) 운영기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향후 위원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7) 운영기관은 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심의위원회 운영

- 1) 운영기관은 사전검토의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2)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3)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4) 간사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의 일부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심의사항

- 1)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 가) 사전검토를 거친 신청서 검토·평가(지원금의 적정성, 우선순위 결정 등)
 - 나) 현장실사 검토서
 - 다) 지원대상 사업장,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검토 및 선정
 - 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평가
 - 마) 지원금 환수,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과 지원금 지급결정의 변경, 취득설비 처분에 관한 검토
 - 바) 사업 완료 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검토
 - 사) 그 외 운영기관이 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가. 사업공고

- 1)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개요
 - 나) 사업추진체계
 - 다)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범위
 - 라) 신청방법
 - 마) 지원업체 선정 절차
 - 바) 평가방법
 - 사) 추진일정
 - 아) 그 밖에 사업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고 대상

- 1) 신청업체 자격
 - 가) 지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중 노후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경기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에 보유한 업체
- 2)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은 [\[부록 1\]](#)과 같다.

□ 공고 방법

- 1)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야 한다.
- 2) 공고 결과, 신청 건수가 저조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내에서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다.

□ 지원금 지원 범위

- 1) 지원금의 최대 지원금액은 지원업체별 5천만원이며, 지원항목별 시설 개선비의 최대 80%로 산출(천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2)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한다.
- 3)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 가) 부가가치세
 - 나)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가건물 포함)
 - 다) 기존 시설을 철거만 하는 경우
 - 라) 단순용량 증대(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 4)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 가)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체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업체에서 제외한다.
 - 가) 지원업체가 지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 지원이 진행(예정) 중인 경우
 - 나) 지원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다) 지원업체 또는 지원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라) 지원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마) 과거 운영기관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이득을 취한 업체
 - 바) 사업기간 내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업체
 - 사)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성격에 부적합한 업체
 - 아)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2) 단, 타 지원금 수급이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다.
- 가) 해당설비가 아닌 타 설비의 지원금을 수령 받은 경우
 - 나) 해당설비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금을 수령 받은 경우, 타기관 지원금 운영지침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 다) 취급시설 설비의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지원사업 신청·접수

- 1) 신청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 까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가) 신청서 및 첨부자료[\[별지 제1호 서식\]](#)
 - 나)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라)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2) 신청업체는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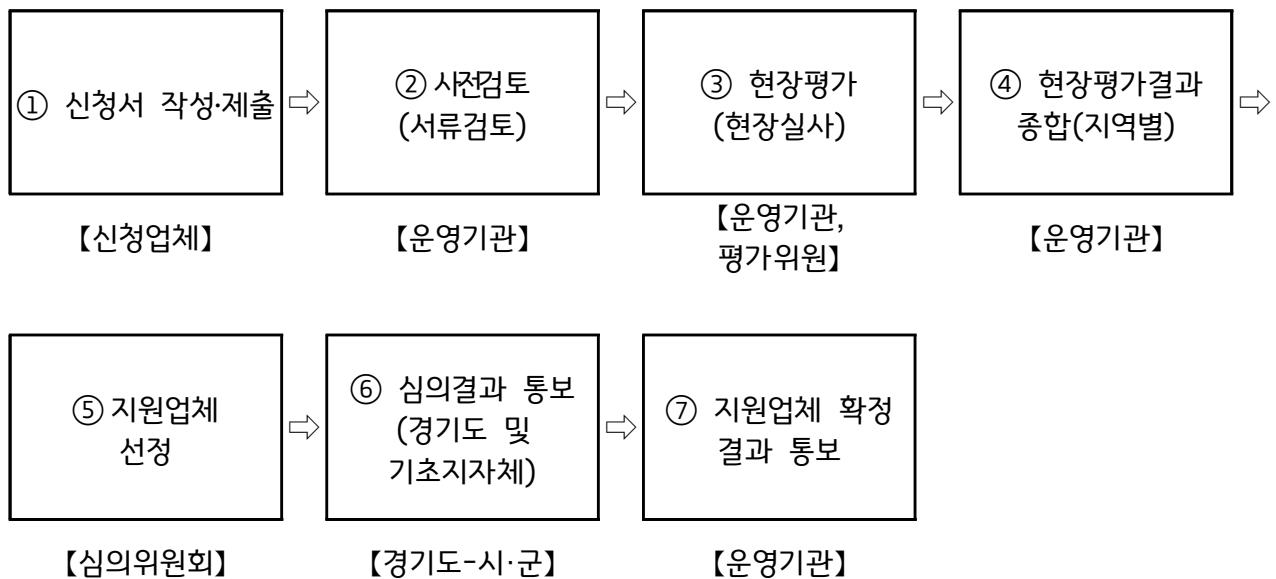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신청서류는 사업공고에 명시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동 사업에 신규로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선정한다. 신규 신청 규모가 지원금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 업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선정할 수 있다. 단,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련 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동일시설 내 동일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다.

6. 지원업체 선정평가

가. 선정평가 절차

- 1) 선정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나. 사전검토(서류검토)

- 1) 운영기관은 신청업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 나)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해당 여부
 - 다) 신청 자격의 적절성
 - 라) 지원금 지원 제외 및 사업참여 제한 여부
 - 마) 기타 신청 내용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 운영기관은 사업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자격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3) 운영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다. 현장평가(현장실사)

- 1) 운영기관은 신청업체별로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현장실사를 수행 한다. 단,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 현장실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현장실사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현장실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적합성을 심의한다.
- 3) 현장실사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현장실사는 신청서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필요 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나) 현장실사시 신청서 오기입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용량, 단위, 대수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지원업체 선정

- 1) 운영기관은 선정평가 및 가점기준 [\[부록 2\]](#), 평가지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 가) 종합평점 산출 결과,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 지표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2)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순위를 정해 선정하며 필요할 경우 사업비(지원금)을 매칭한 기초지자체(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3) 신규 신청업체만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하여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사업의 과거 지원이력이 있는 신청업체 중 선정평가 절차를 실시함으로써 지원업체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마. 지원업체 확정

- 1)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 지원업체를 확정한다.
- 2)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지원업체를 확정 한다.
 - 가) 지원업체가 협약을 포기한 경우
 - 나) 운영기관이 지원업체와 협약을 해지한 경우
 - 다) 세목별 잔여예산 발생에 따른 기업지원 예산이 추가 확보된 경우
 - 라) 그 외 특정한 사유로 인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보

- 1) 운영기관은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업체에 통지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7. 협약 및 지원금 지급

가. 협약체결

- 1) 운영기관과 지원업체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협약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지원업체가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기 사유서[별지 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운영기관은 제출된 협약서를 검토·확인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원업체로 하여금 보완 요청 할 수 있다.
- 4) 협약기간은 확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협약 해지

- 1) 지원업체가 협약체결 후 지원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협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신청서[별지 제19-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검토 후 협약 해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2)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업체와의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협약 해지 통지서[별지 제19-2호 서식]에 따라 협약 해지를 통지한다.
 -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라) 부적정으로 집행한 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마) 운영기관의 승인없이,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바) 협약체결 전 지원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계약 또는 발주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 천재지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 지원업체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지원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 공고문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차) 착수신고서, 지원설비개선완료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카) 기타 정책상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운영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3) 운영기관은 상기 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의 중지, 현장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다만, 운영기관은 지원업체가 해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협약 해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협약변경

- 1) 지원업체는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운영기관에 협약 변경 신청서[별지 제18-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가) 지원업체명, 지원업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3) 운영기관은 지원업체가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지원업체에게 그 결과를 협약 변경 통지서[별지 제18-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라. 지원금 지급

- 1) 운영기관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2) 지원업체는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별도의 은행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해당 은행계좌에 지원업체의 부담금(현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3) 운영기관은 지원업체의 부담금(현금) 입금,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4)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관련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지원업체에게는 관련 서류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8. 지원사업 관리

가. 착수신고

- 1) 지원업체는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승인

- 1) 지원업체는 다음의 경우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17-1호 서식]에 따라(이하 “변경신청서”라 한다)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가)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용량, 대수, 위치에 한함) 변경

※ 지원항목 변경 불가. (ex. 배관 및 관련설비 → 방류벽 등)

나) 사업비 변경

다) 설치업체 변경

- 2) 착수신고 이전의 설치업체 변경과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변경이 없는 사업비 변경은 착수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용량, 대수 변경 시 지원금도 일정 비율로 감소될 수 있다.)
- 3) 운영기관은 변경신청서에 대해 검토 후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지서[\[별지 제17-2호 서식\]](#)를 지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인 변경 등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다. 상황보고

- 1)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여 지원업체에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2) 상황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실시상황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사고의 보고

- 1) 지원업체는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취득설비에 한하여 업무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사고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2) 운영기관은 심의위원회에 위 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조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총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가. 설치확인

- 1)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 이전에 설비개선을 완료하고, 지원 설비 개선 완료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운영기관은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를 검토하고, 설비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의 내용(설비사양 등)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평가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한다.
(필요시 지원업체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3) 운영기관은 상기 2)항의 설치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 4) 지원업체는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설치 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 한국산업표준 등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5)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중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설비의 철거 및 분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총 사업비 정산

- 1)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 이전에 정산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한내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3) 운영기관은 지원업체에서 집행한 총 사업비 등을 확인하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집행 금액을 불인정하고 환수 할 수 있다.

- 4) 운영기관은 지원업체의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불인정 금액 환수, 이자 등)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실행 또는 권원 확보를 위한 사법절차 진행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5) 지원업체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검토 결과를 지원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6) 운영기관은 정산 및 환수 결과를 지원금 집행 계획 및 실적 보고 시 포함시켜 보고하여야 한다.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가. 취득설비의 관리

- 1)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도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지원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2)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대장 1부를 지원금 정산서 제출 시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지원업체가 취득설비 등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기관은 해당 지원업체에게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환수요구를 받은 지원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4)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 · 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취득설비 처분의 제한 등

- 1) 동 사업을 통해 지원업체가 취득한 설비 등은 5년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기관은 관련 설비 처분에 대한 심의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2) 운영기관은 지원업체의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운영(가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상기 사항의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11. 보칙(가. 지원금 환수)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1. 보칙

가. 지원금 환수

- 1) 운영기관은 지원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시 제재사항[\[부록 3\]](#)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라) 부적정으로 집행한 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마)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신청서에 명시된 이행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바)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사) 그 밖에 심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 2) 운영기관은 위와 같은 사항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즉시 이를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참여제한 여부

- 1) 운영기관은 지원업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시 제재사항 [\[부록 3\]](#)의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가) 위의 지원금 환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지원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다) 지원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지 않은 경우
- 2) 운영기관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처분통보

- 1) 운영기관은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처분 통보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위반사항이 아닌 기타 사유에 의한 처분도 처분통보서를 이용하여 통지 할 수 있다.

라. 이의신청

- 1) 사업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제재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지원업체 등이 기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3) 운영기관은 이의가 제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경기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침에 근거 하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 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4) 동일한 사유의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마.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 1)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 포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 가) 동 사업의 신청서 내용과 시설개선 자료를 취급하는 자
 - 나) 현장조사반에서 업무를 수행한 자
 - 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 라) 그 외 시설개선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 3) 운영기관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4) 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는 비밀 준수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 및 청렴 서약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현장실사 및 현장평가에 참여한 기술전문가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2.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13. 기타사항

필요 시 도-시·군-운영기관의 협의하에 본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부록1] 지원대상 시설 항목 및 세부내역

1.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연 번	지 원 항 목	세 부 내 용
1	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	검지 및 경보설비(누액/가스감지기)와 통신설비(구내전화, 무전기, 확성기 등) 설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미리 감지해 위해를 예방하고 정전 시에도 전력이 공급되도록 비상전력설비 설치 (배터리 또는 비상발전기 등)
2	화학사고 보호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응급 조치에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구비 및 비치 (방독마스크, 보호복, 내산장갑등)
3	방재용품	사고 유해화학물질의 방재 작업에 필요한 물품 구비 및 비치 (케미칼흡착포, 흡착휀스, 통제테이프, 비상랜턴등)
4	방폭설비	폭발사고 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폭전기설비 설치 (방폭펌프, 방폭조명, 방폭콘센트, 방폭전선등)
5	배관 및 관련설비	취급물질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강도 및 두께의 배관 및 관련설비
6	환기, 배출설비 개선	회전식 고정벤더레이터, 루프팬방식의 설비, 월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
7	긴급차단설비 (인터록 등)	액화상태 기체 화학물질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 등에 긴급차단장치
8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출설비
9	긴급세척시설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시설 포함)
10	정전기 제거설비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한 정전기 제거 설비(접지, 피뢰침 설치 등)
11	방류벽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탱크의 방류벽 설치, 보수, 바닥공사
12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レン치	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또는 트렌치설치, 보수, 바닥공사, 집수시설 포함
13	외부유출 방지설비	제조사용시설, 보관시설의 외부유출 방지설비 설치·보수 (출입구 방지턱, 트렌치 등)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제조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교반기, 반응기, 펌프 등)
15	적재함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적재하나 하역할 때 넘어짐 등으로 인해 충격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설치
16	저장탱크	해당 물질의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저장탱크 교체 및 보수, 저장탱크 이격을 위한 탱크 이설, 지반조사(공사), 고정장치 포함
17	펌프 등 유체 이송장치	유해화학물질 이송 펌프 설비에 대한 기준준수 및 유지·보수 (견고한 기초설계, 방지턱, 바닥경사 및 집수설비 등)
18	계측장치(배관 외)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한 계측장치 (온도계, 액위계, 유량계, 압력계 등)
19	조명설비	일조시간 이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적절한 조도 수준을 위한 조명
20	기타	기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2. 주요 지원시설 세부내역

지 원 항 목	세 부 내 용	사 진 예 시
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	경보설비(누액/가스감지기)와 통신 설비(구내전화, 무전기, 확성기 등)	
화학사고 보호구	응급조치에 필요한 개인보호장구 (방독마스크, 보호복, 내산장갑 등)	
긴급차단설비 (인터록 등)	화학물질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 등에 긴급차단장치	
긴급세척시설	인체누출 시 긴급세척시설 (샤워시설 포함)	
방류벽	물질누출 확산방지를 위한 방류벽 설치, 보수, 바닥공사	
외부유출 방지설비	외부유출 방지설비 설치·보수 (출입구 방지턱, 트렌치 등)	

[부록2] 선정평가 및 가점 기준

1.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신청 업체 현황 (100)	위험도 (30)	-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영업허가 기준으로 취급량이 많은 순으로 평가 15
		- 주민대피 대비물질(16종) 취급여부 ※ 영업허가 기준으로 16종 중 1종 이상 취급할 경우 점수 부여 15
	영세성 (25)	- 근로자수 ※ 공고시점 이후에 발급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한 검증 및 확인 15
		- 업체 규모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 최근 3년이내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해당여부 확인 10
	사업효과성 (20)	- 지원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 ※ 시설 개선 및 교체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를 평가 20
	노후도 (15)	- 대상 설비 설치년도 ※ 설비가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15
	투자 의지 (10)	- 총 자부담금 규모 ※ 많을 경우, 투자의지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10
계		100

* 주민대피 대비물질(16종) : 메틸아민, 불소, 불화수소, 산화에틸렌, 삼염화 봉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염소, 염화수소, 이산화염소, 트리메틸아민, 트리클로로실란, 포름알데하이드, 포스겐,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 황화수소,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발생초기 지자체 주민알림 대비 결정 지원체계('18.11.)

* 물(공기 내 수분)과 반응하여 상기 16종으로 생성되는 화학물질(육불화텅스텐)도 포함

2. 가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가점	- '24년 사업 수요조사 응답업체(시·군·도 제출 공문 기준)	2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사업 기 참여업체	2
계		4

[부록3] 위반 시 제재사항

1. 지원금 환수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 부적정으로 집행한 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환수 (처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액 환수)
○ 지원금으로 지원된 설비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환수
○ 그 밖의 심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지원금 환수

2. 사업참여제한 조치기준

구 분	주요 위반사항	조치기준
지원금 지급 이전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증빙 자료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협약체결 시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지원금 지급 이후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참여제한 1년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 부적정으로 집행한 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3년
공 통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기관의 자료제출과 점검·평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참여제한 5년

[별지 제1호 서식]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② 기본 정보 (업체 정보 관리)	업체명			설립년도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수(인)		* 공고시점 이후 발급된 4대보험가입증명원 기준	법인등록번호							
	기업 구 분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중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기준						
				산업단지	□ 내(산업단지명 작성)						
					□ 외						
	본사	주소									
	신청 사업장	전화			FAX						
	담당자	주소				구분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담당자명	전화				부서/직책					
e-mail					휴대폰번호						
④ 신청 정보	지원 항 목	①	누출경보시스템 및 비상전력설비	②	회화사고 보호구	③	방재용품	④	방폭설비	⑤	배관 및 관련설비
		⑥	환기, 배출설비 개선	⑦	긴급차단설비 (언터컷 등)	⑧	국소배기장치 (후드, 덕트)	⑨	긴급세척시설	⑩	정전기 제거설비
		⑪	방류벽	⑫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レン치	⑬	외부유출 방지설비	⑭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⑮	적재함
		⑯	저장탱크	⑰	펌프 등 유체 이송장치	⑱	계측장치 (배관 외)	⑲	조명설비	⑳	기타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비율			
	총 사업비(C=A+B)						천원 %				
	지원금(A) ※최대 5,000만원 한도						천원 %				
	자부담금(B)						천원 %				
	VAT(부가가치세)						천원(지원대상 아님)				
타 지원금 수급이력 ※금번 설비 限	□ 있음 (사업명: _____ /수급일자: _____)							□ 없음			
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구하											



시설 현황 및 개선 계획(예시)

□ 시설 및 지원항목(현재기준)

우선 순위	시설명	지원항목	개선방법	용량	단위	대수	설치년도	설치년도 증빙여부	현장사진
1	황산저장시설	방류벽	방류벽 노후화 개선	10m³	개	1	1998년		1장
2	황산지하자장시설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트렌치 유지·보수	-	-	-	-		1장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은 예시 및 아래 표를 참조하여 기자재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행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계획서

개 선 내 용 및 개 선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저장시설-방류벽 누출사고 발생 시 외부 화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 도모 ○ 황산지하자장시설-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누출사고 발생 시 외부 화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 도모
개 선 사 업 추 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저장시설-방류벽 방류벽 보수공사를 위해 보강 시멘트 작업 및 우레탄 방수 처리 추진 ○ 황산지하자장시설-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트렌치 설치
추 진 성 과 (기 대 효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저장시설-방류벽 누출사고 발생 시 외부 화산 최소화에 따른 2차 사고 예방효과 ○ 황산지하자장시설-적재하역장소 작업환경 개선 및 탱크로리 상하차구역 입출고 시 안전성 확보에 따른 2차사고 예방효과
기 존 설 비 분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저장시설-방류벽 기존 설비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첨부예정) ○ 황산지하자장시설-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신규설비 설치로 해당사항 없음

□ 지원항목별 견적 입력(개선계획)

(VAT제외한 금액입력, 단위: 천원)

시설 구분/시설명 /지원항목	개선 방법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설치업체명	견적금액	지원금	자부담금	비교견적금액
실외저장시설/ 황산저장시설/ 방류벽	방류벽 노후화 개선		10m³	개	1					
실외저장시설/ 황산저장시설/ 적재하역장소 방지턱/트렌치	트렌치 유지· 보수		-	-	-					

(b)

개 선 계 획 총 팔 내 역 서(예시)

□ 총괄표

우선 순위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사업수행 업체명	견적금액 (VAT제외, 단위 : 천원)
1	황산저장시설	방류벽	- / ₩100	10	m ³	1	₩100	41,720
2	황산지하저장시설	적재하역 장소	- / ₩100	-	식	1	₩100	4,000
3			-					
4			-					
합계								45,720

□ 종합내역서

(단위 : 천원)

항목	금액	비율	비고
총 사업비(C=A+B)		100%	
지원금(A)		%	*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금(B)		%	
VAT(사업비의 10%)			(지원대상 아님)



첨부서류

1. 지원대상 시설의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및 산출근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1부(영업허가대상 사업장일 경우 한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민대피 대비물질(16종) 취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5.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배치도, P&ID, PFD)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必)
7.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8.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9. 기타 추가 서류(해당 시)
 -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업명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업체명		대표자명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청하는 지원대상의 동일시설 내 동일항목에 대하여 타 정부지원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만약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이 환수됨을 확인합니다.

※ 타 지원금 수급 이력 제외 사항

- 해당설비가 아닌 타 설비의 지원금을 수령 받은 경우
- 해당설비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금을 수령 받은 경우, 타기관 지원금 운영지침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취급시설 설비의 교체 및 보수가 아닌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 사업운영 위탁대행업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운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 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 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을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현장실사 검토서

현장실사 검토서

□ 업체기본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내()	<input type="checkbox"/> 외	
소재지	주 소			
	전 화		FAX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휴대폰번호	

□ 시설 및 지원항목

No	현재 기준						
	시설명	지원항목	용량	단위	대수	설치년도	설치년도증빙
1							
2							

No	개선 계획						
	시설명	지원항목	용량	단위	대수	설치업체	견적금액
1							
2							

□ 검토1) 신청서와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과의 일치여부(사업장 기본정보 및 신청정보 등)

일치	불일치	내용

□ 검토2) 설치년도 증빙 자료가 없을 시 육안 확인에 따른 개선 필요성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내용

□ 검토3) 현장실사 의견

현장실사일	20	년	월	일
검토자 ①	소속 성명	(인)	대표자 (대리인)	소속 성명
검토자 ②	소속 성명	(인)		

현장 사진(설비 설치 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이내에서만 추가 첨부 가능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업체 평가표

신청업체 평가표

기본정보

사업명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평가일			
업체명			

업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득점
		1,000톤 이상	500톤 이상	100톤 이상	-	-	
위험도 (30)	①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15) ※ 영업허가 기준으로 취급량이 많은 순으로 평가	15	13	11			
	② 주민대피 대비물질(16종) 취급여부(15) ※ 영업허가 기준으로 1종이상 취급할 경우 점수 부여	15	13	11			
영세성 (25)	④ 근로자수(15) ※ 공고시점 이후 발급된 4대보험 가입증명원 기준으로 평가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통한 검증 및 확인	5인 미만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100인 초과	
		15	14	13	12	11	
사업 효과성 (20)	⑤ 업체규모(1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 3년 이내 중견기업으로 등록된 기업 확인서의 특례 해당여부 확인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10	9			8	
노후도 (15)	⑦ 지원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20) ※ 시설 개선 및 교체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를 평가	지원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장성평가)					
		20	18	16	14		
투자 의지 (10)	③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설치년도(15) ※ 증빙 자료 등이 없을 시 사업장 운영 연수	20년이상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미만	10년미만		
		15	13	11			
가점 (4)	⑥ 총 자부담금 규모(10) ※ 자부담금이 많을 경우, 투자의지가 높다는 기준으로 평가	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0	9	8	7		
합계(총점)	① 지원사업 참여의향 수요조사서 응답여부(2) ※ '24년 사군 → 도 재출 공문기준	응답		미응답			
		2		0			
	②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기 참여업체(2)	참여		미참여			
		2		0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

귀 업체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업체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지원업체 현황

지원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금(원)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No	시설명	지원항목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1						
2						
3						

* 필요시 셀추가 수정 가능

□ 지원조건

- 가. 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나.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착수신고, 정산보고, 사후 관리 보고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다.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약변경 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함
- 라. 기타 지원조건은 경기도지사 또는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이 부여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별지 제8호 서식] 협약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협약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0000테크노파크와 (지원업체명)은(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협 약 당사자	(재)0000테크노 파크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업체명)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 약 내 용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table border="1"><thead><tr><th>No</th><th>시설 구분</th><th>시설명</th><th>지원 항목</th><th>모델명/ 제조사</th><th>용량</th><th>단위</th><th>대수</th><th>지원 항목별 협약금액</th></tr></thead><tbody><tr><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No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지원 항목별 협약금액	1									2								
No	시설 구분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지원 항목별 협약금액																					
1																													
2																													
<table border="1"><thead><tr><th>항목</th><th>협약금액</th><th>비율</th><th>비고</th></tr></thead><tbody><tr><td>총 사업비($C=A+B$)</td><td></td><td>100%</td><td></td></tr><tr><td>지원금(A)</td><td></td><td>%</td><td>* 최대 5,000만원 한도</td></tr><tr><td>자부담금(B)</td><td></td><td>%</td><td></td></tr><tr><td>VAT(사업비의 10%)</td><td></td><td>-</td><td>(지원대상 아님)</td></tr></tbody></table>	항목	협약금액	비율	비고	총 사업비($C=A+B$)		100%		지원금(A)		%	*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금(B)		%		VAT(사업비의 10%)		-	(지원대상 아님)									
항목	협약금액	비율	비고																										
총 사업비($C=A+B$)		100%																											
지원금(A)		%	*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금(B)		%																											
VAT(사업비의 10%)		-	(지원대상 아님)																										
협약 기간 협약일 ~ 년 월 일(사후관리기간 포함)																													

-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운영기관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취득설비를 양도·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20 년 월 일

(재)0000테크노파크 이사장

(지원업체명) 대표이사

_____ (인)

_____ (인)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협약내용

[본 문 조 항]

제1조 (협약의 목적)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지원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시설개선에 대해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정의)

본 협약서 상의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이라 함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서’에 명시된 지원항목을 말한다.

제3조 (협약의 체결)

- ①(재)0000테크노파크와 지원업체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재)0000테크노파크는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원업체에게 통보한다.
- ③협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로부터 00년 00월 00일로 한다.

제4조(설비의 준공)

- ①지원업체는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지원사업의 준공 및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재)0000테크노파크는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의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 ①(재)0000테크노파크는 설비 개선 후 지원업체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재)0000테크노파크 및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도-시·군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계획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미지급 및 환수)

지침에서 규정한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0000테크노파크는 지원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 ① 지원업체는 본 협약서 및 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②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이 사업기간 내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고의 보고 규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재)0000테크노파크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 ③ 지원업체는 계획 변경 등의 승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0000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받는다.
- ④ (재)0000테크노파크이 지원업체의 상황보고 등을 통해 지원사업 실적이 지원금 지급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업체는 (재)0000테크노파크의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재)0000테크노파크이 지원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통보한 경우 지원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지원업체는 (재)0000테크노파크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 ① 지원업체는 지침의 총 사업비 정산 규정에 의해 정산서류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지원업체는 지원사업을 통해 취득 또는 개선한 대상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재)0000테크노파크와 지원업체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지침에 따라 협약 변경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재)0000테크노파크와 지원업체는 지침에 따라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조치)

(재)0000테크노파크은 지침의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업체에게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재)0000테크노파크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재)0000테크노파크와 지원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협약 목적)

(재)0000테크노파크, 지원업체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이 소기의 사업목적과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토록 한다.

제2조(협약 범위)

(재)0000테크노파크, 지원업체간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절차에 대한 협약에 한정된다.

제3조(협약 책임)

(재)0000테크노파크은 협약서에 명시된 제품, 시공 상 안전 및 신뢰성 등 소비자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과는 무관하고,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별지 제9호 서식] 착수신고서

착수신고서

□ 지원정보

□ 사업비 구성(단위 : 천원)

구 분	협약 금액	착수 금액	비고
총 사업비($C=A+B$)			
지원금(A)			※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금(B)			
VAT(사업비의 10%)			(지원대상 아님)

신청서 변경사항 여부 없음 있음()
 착수연월일 : 20 년 월 일
 준공연월일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이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韓國

보고인 (인)

첨부 1. 계약서

2. 개선예정 배치도 및 설치도면

* 차수금액은 협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이 달라지면 현장 실사를 통해 협약변경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실시상황 보고서

실시상황 보고서

1. 업체명 :

2. 설치 현황

설비설치 진행상황	
--------------	--

3. 사업 소요비용 사용 현황

구분	사업 소요 비용			
	사업비	지원금 지급결정액	실 적	잔 액
합계				

4. 특이사항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첨부 1. 공정표

2. 설비 설치 진행상황 사진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

지원설비 개선 완료서

지원정보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설치장소								
	사업계획변경여부							O / X	
	연번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금액(천원)	설치업체명
1									
2									
3									

사업비 구성(단위 : 천원)

구 분	협약 금액	착수 금액	준공 금액	비고
총 사업비($C=A+B$)				
지원금(A)				※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금(B)				
VAT(사업비의 10%)				(지원대상 아님)

착수연월일 : 20 년 월 일

준공연월일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이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 첨부
1. 설비준공확인서 등 개선완료 증빙서류
 2. 개선 후 배치도 및 설치도면
 3. 현장 설비 설치 사진
 4.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등의 증빙서류(해당 시)
 5. 기존설비 철거 및 처분 증빙자료(해당 시)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업체명	
현장 설비 설치 사진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현장평가 검토서

현장평가 검토서

업체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내()		<input type="checkbox"/> 외		
소 재 지	주 소					
	전 화			FAX		
담 당 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e-mail			휴대폰번호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No	시설명	지원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제조사/모델명	용량	단위	대수	제조사/모델명	용량	단위	대수
1										
2										
3										

검토1) 개선 완료와 현장 확인 일치여부(지원설비 개선완료서와의 일치)

일치	불일치	불일치 내용

검토2) 기존설비의 철거 및 분해 여부 확인

적정	부적정	해당없음	내용

검토3) 설비의 구조, 고정, 이격거리, 재질 등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내용

현장실사일 20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①	성명	(인)
검토자	소속	
②	성명	(인)
대표자	소속	
(대리인)	성명	(인)

업체명	
현장 사진(설비 설치 후)	
① 설비내용 :	② 설비내용 :
③ 설비내용 :	④ 설비내용 :
⑤ 설비내용 :	⑥ 설비내용 :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 위주로 첨부하고,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도 최대 1~2page 내에서만 추가 첨부 가능

[별지 제13호 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지원업체명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설치장소			금액				설치 업체명
	연번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협약	착수	준공	신청	
1												
2												
3												

사업비 구성(단위 : 천원)

구 분	협약금액	착수금액	준공금액	지원금 신청금액	비율	비고
총 사업비(C=A+B)					100%	
지원금(A)					%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금(B)					%	
VAT(사업비의 10%)					-	(지원대상 아님)

지원금 지급처

구 分	내용
예금주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1. 지급통장 사본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정산보고서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지원업체명					설치장소		
2. 지원정보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연번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1						
	2						
3. 당해연도 총 사업비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협약금액	착수금액	준공금액	지원금 신청금액	비율	비고	
총 사업비(C=A+B)					100%		
지원금(A)					%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금(B)					%		
VAT(사업비의 10%)					-	(지원대상 아님)	
4. 지원금 집행현황							
(단위: 천 원)							
지원항목	설치업체	계약금액	집행금액	지원금 집행금액 (계약금액의 80%)			
총계							
<p>[첨부] 1.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1부. 2.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1부. 끝.</p> <p>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사후관리 보고서

사후관리 보고서

사후관리 보고서

기본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용량	대수	비고
취득설비 현황	지원사업 완료 시점		지원사업 00년 경과 후			
	(사진)		(사진)			
추후 관리계획						

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17-1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① 기 본 정 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		
	주소				
	지원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	지원항목	설치업체명
		1			
2					
3					
협약금액 (지원금)					
④ 변 경 사 항	선택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변경 (용량, 대수, 위치 限)			
	<input type="checkbox"/>	사업비(지원금) 변경			
	<input type="checkbox"/>	설치업체 변경			

* 지원항목 변경 불가. (ex. 배관 및 관련설비 → 방류벽 등)

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변경 세부 내역

□ 변경내역 상세

□ 변경사유

□ 첨부서류

변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내역	<input type="checkbox"/> 변경 계약서 및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설비사양서 등)	*변경신청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명세 작성
	<input type="checkbox"/> 변경 전/후 현장 사진	*설치위치 변경
사업비 변경	<input type="checkbox"/> 견적서 및 내역서	
설치업체	<input type="checkbox"/> 변경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별지 제17-2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지서

사업계획변경 승인 통지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	지원항목	설치 업체명
1					
2					
3					
협 약 금 액 (지원금)					
승 인 내 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nput type="checkbox"/>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변경 (용량, 대수, 위치 限)			
	<input type="checkbox"/>	사업비(지원금) 변경			
	<input type="checkbox"/>	설치업체 변경			
<p>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 년 월 일</p> <p>(재)0000테크노파크 원장</p>					

[별지 제18-1호 서식] 협약 변경 신청서

협약 변경 신청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	지원항목	설치 업체명
		1			
2					
3					
협 약 금 액 (지원금)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nput type="checkbox"/>	지원업체명			
	<input type="checkbox"/>	지원업체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p>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협약 변경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첨부 : 세부사유서 및 기타 증빙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p>					

[별지 제18-2호 서식] 협약 변경 통지서

협약 변경 통지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	지원항목	설치 업체명
1				
2				
3				
협 약 금 액 (지원금)				
승 인 사 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p>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협약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 년 월 일</p> <p>(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p>				

[별지 제19-1호 서식] 협약 해지 신청서

협약 해지 신청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	지원항목	설치 업체명
		1			
2					
3					
협 약 금 액 (지원금)					
해 지 사 유					
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의 협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19-2호 서식] 협약 해지 통지서

협약 해지 통지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 원)			
		연번	시설명	지원항목	설치 업체명
		1			
2					
3					
협 약 금 액 (지원금)					
해 지 사 유					
<p>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의 협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 년 월 일</p> <p>(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p>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 포기 사유서

사업 포기 사유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	지원항목	설치 업체명
		1			
2					
3					
신청금 액 (지원금)					
포 기 사 유	항 목	사 유			
	협약 포기				
<p>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의 사업 포기 사유를 제출합니다.</p>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사고보고서

사고보고서

기 본 정 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	
	주소			
사고내용 및 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사고가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				
금후계획 및 담당자 의견				

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수행 중의 업무 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처분통보서

처 분 통 보 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처 분 대 상	연번	시설명		지원 항목	모델명/ 제조사	대수	집행금액 (천원)	환수비용 (천원)
	1							
	2							
	3							
처분내역								
처분사유								
귀 지원업체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처분통보 규정에 의거 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주 소			
처 분 내 용				
처분 고지일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상기와 같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비밀준수서약서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참여를 통해 알게 되는 제반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재)0000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의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지원업체 선정·평가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